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11. 26

나. 회부일자 : '97. 11. 26

3. 제안내용

- 각종 인·허가 등 행정처분시 의무적으로 첨가 소화하는 지역개발공채를 '98년도부터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「등록발행제도」를 도입함으로써,
- 실물증권 거래에 따른 인적·물적·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매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지역개발공채의 발행·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에 등록하여
(조례제4조제2항)
- 기금융자절차및 상환방법명문화(조례제10조의2, 제10조의3)

- 용자금 수령시 차용금증서와 영수증 제출
- 용자금상환 지체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입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재정 운영해 오던중 지역개발공채의 실물증권거래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첫째, 지역개발공채의 발행,유통 및 원리금 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증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(안제 4조제2항)

둘째, 기금 용자절차 및 상환방법을 명문화 (안제10조의2,3)하여 용자금 수령시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고 용자금 상환지체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입하는 것으로 하는 등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,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